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전 원 회 의

결 정 제 2014 - 006 호

2014. 1. 8.

- 사 건 번 호            2013카총1943
- 사 건 명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터키공사 입찰관련 21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피 심 인                1.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포항시 남구 괴동동 568-1  
                              대표이사 정○○, 유○○  
                              대리인 변호사 서 정, 전규형, 김성은
2. 쌍용건설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신천동 7-23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최병호, 강 일, 심건섭
3.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대표이사 정○○, 박○○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손금주, 최연석, 김건웅
4. 주식회사 태영건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8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형석, 조병규, 김보연

5.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37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신사도

6.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대표이사 서○○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한서희

7. 두산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5-7  
대표이사 박○○, 최○○

대리인 변호사 정재훈, 이승규, 신정수

8.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8  
대표이사 조○○, 최△△

대리인 변호사 변동열, 류용호, 조영대

9. 주식회사 한양  
서울 송파구 신천동 7-2 월드타워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김수홍

10.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이동률, 이재환

11.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과천시 별양동 1-23

대표이사 안○○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12. 삼성물산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21-20 삼성물산 빌딩

대표이사 정□□, 김 □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정성무

13.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2

대표이사 김 ○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동률, 김주연

14. 롯데건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잠원동 50-2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진, 윤성운, 박철규, 안준규, 박성진

15.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69-167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민호, 김지연, 최승호

16. 금호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115번지

대표이사 기 ○

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오승돈, 김영관

심 의 종 결 일      2013. 12. 27.

## 주 문

피심인들을 각 고발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여 표기한다. 각 피심인에 대하여 모두 같다), 쌍용건설, 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에스케이건설, 한양,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삼성물산, 대림산업,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금호산업<sup>1</sup>(이하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1.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 2. 행위사실

---

1 피심인 금호산업은 212공구 주간사인 코오롱글로벌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낙찰받았다.

2 피심인들은 인천도시철도 건설본부가 2009. 1. 14.(1. 19. 연기) 입찰공고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공구·202공구·207공구·208공구·209공구·210공구·211공구·212공구·213공구·214공구·215공구와 같은 해 2. 3. 입찰공고한 203공구, 같은 해 3. 5. 입찰공고한 204공구·205공구 및 같은 해 4. 21. 입찰공고한 216공구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2008년 12월 경부터 2009년 4월 경에 걸쳐 각 공구별로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정하여 각 공구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아래 < 표 >와 같이 개별 공구별로 입찰에 응하여 실행한 사실이 있다.

< 표 >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결과

(단위 : 백만원, %)

공구	낙찰업체	예산 금액	낙찰 금액	입찰자	입찰 금액	투찰률	가격 점수	설계 점수	종합 평점
201공구	포스코건설	87,118	82,631	포스코건설	82,631	94.84	50.00	44.50	94.50
				롯데건설	85,465	98.10	48.34	38.60	86.94
202공구	쌍용건설	79,323	78,935	쌍용건설	78,935	99.51	40.00	53.42	93.42
				서희건설	79,164	99.79	39.88	46.67	86.55
203공구	현대산업개발	129,602	122,992	현대산업개발	122,992	94.89	39.78	51.11	90.89
				에스케이건설	122,345	94.40	40.00	45.91	85.91
204공구	태영건설	71,269	70,991	태영건설	70,991	99.60	29.92	62.05	91.97
				두산건설	70,821	99.37	30.00	56.66	86.66
205공구	지에스건설	98,008	93,078	지에스건설	93,078	94.96	39.65	53.86	93.50
				현대산업개발	92,255	94.13	40.00	48.95	88.95
207공구	대우건설	131,352	131,286	대우건설	131,286	99.95	34.98	56.54	91.52
				현대건설	131,220	99.90	35.00	53.11	88.11
208공구	두산건설	56,362	56,051	두산건설	56,051	99.43	34.59	56.86	91.45
				대보건설	55,398	98.29	35.00	51.68	86.68
209공구	에스케이건설	95,263	90,481	에스케이건설	90,481	94.98	35.00	57.71	92.71
				대우건설	95,253	99.98	33.24	52.82	86.06
210공구	한양	69,359	68,583	한양	68,583	98.88	34.90	57.78	92.68

공구	낙찰업체	예산 금액	낙찰 금액	입찰자	입찰 금액	투찰률	가격 점수	설계 점수	종합 평점
				고려개발	68,387	<b>98.60</b>	35.00	52.23	87.23
211공구	현대건설	102,186	102,083	현대건설	102,083	<b>99.90</b>	34.96	57.24	92.20
				지에스건설	101,982	<b>99.80</b>	35.00	51.82	86.82
212공구	코오롱글로벌	85,345	84,480	코오롱글로벌	84,480	<b>98.99</b>	39.79	53.06	92.85
				한 양	84,056	<b>98.49</b>	40.00	47.30	87.30
213공구	삼성물산	75,837	74,319	삼성물산	74,319	<b>97.99</b>	39.38	53.10	92.48
				진흥기업	73,184	<b>96.50</b>	40.00	49.08	89.08
214공구	대림산업	89,854	85,344	대림산업	85,344	<b>94.98</b>	40.00	52.22	92.22
				태영건설	86,660	<b>96.44</b>	39.39	48.25	87.64
215공구	롯데건설	51,035	48,331	롯데건설	48,331	<b>94.70</b>	40.00	52.03	92.03
				포스코건설	49,632	<b>97.25</b>	38.95	50.63	89.58
216공구	신동아건설	39,347	39,268	신동아건설	39,268	<b>99.80</b>	49.84	43.55	93.39
				흥 화	39,150	<b>99.50</b>	50.00	40.53	90.53

3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1호증(건설포럼 회원명단 및 연락처), 소갑 제1-2호증(Major사 임원 업무분장 & 조직현황), 소갑 제1-3호증(건설사 영업부서 직원 및 연락처), 소갑 제1-4호증(동종사 모임 정보공유), 소갑 제1-5호증(2008년 본부장 사업계획서), 소갑 제1-6호증[09년도 사업계획(수주)], 소갑 제1-7호증[인천지하철2호선 공구현황], 소갑 제1-8호증[인천도시철도 2호선 현황(08.12.29.)], 소갑 제1-9호증[인천지하철2호선 공구별 참여사 현황], 소갑 제1-10호증[지하철: 인천시 발주], 소갑 제1-11호증[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소갑 제1-12호증[인천지하철 추진 예정사 현황], 소갑 제1-13호증[인천도시철도 2호선 210공구 건설공사(T/K) 설계현황보고], 소갑 제1-15호증[2009년도 주요 업무활동실적], 소갑 제1-16호증[본부 경영현황보고], 소갑 제1-17호증[본부장간담회 주요사항 요약], 소갑 제1-18호증[위원별, 입찰업체별 총점 집계표], 소갑 제1-19호증(설계용역계약 현황), 소갑 제1-20호증[철도/부지사업 수주목표 달성 전략], 소갑 제1-21호증[던키참여관련 업무보고의 건], 소갑 제1-22호증[입찰 참여건 진행상황 보고의 건], 소갑 제1-23호증(○○ 상무 업무수첩), 소갑 제1-24호증[인천도시철도 2호선 212공구(T/K) 입찰참가의 건], 소갑 제1-25호증[기본설계용역비 변경 및 추가계약의 건], 소갑 제1-26호증[사업수행 업무협의자료],

소갑 제1-27호증[철도T/K팀 구상 및 추진계획], 소갑 제1-29호증[공사입찰공고], 소갑 제1-30호증[사업수행계획서], 소갑 제1-31호증[착수보고서], 소갑 제1-32호증[2009년 “삼성” 토목터키 참여 결과], 소갑 제1-34호증[공사원가계산서], 소갑 제1-35호증[4대강 살리기 설계관계자 회의내용 보고], 소갑 제1-36호증[공사도급계약서 (201공구~216공구, 206공구 제외)(조달청)], 소갑 제1-37호증[인천도시철 2호선 공구별 참여사 현황], 소갑 제1-39호증[건설영업임원회의(09.2.16)], 소갑 제1-40호증[인천 지하철 2호선 참여기업 현황], 소갑 제1-41호증[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소갑 제1-42호증[인천도시철도 2호선 참여사 현황], 소갑 제1-43호증[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소갑 제1-44호증[인천지하철 터키/대안 현황], 소갑 제1-45호증[주간 업무회의(3차)], 소갑 제1-46호증(청석엔지니어링 신○○ 상무 업무수첩), 소갑 제1-47호증[2009년 상반기 워크숍 자료 (터실모)], 소갑 제1-48호증[2012년도 경영전략(안)], 소갑 제1-49호증[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공구 건설공사], 소갑 제1-50호증[내부 보고자료], 소갑 제1-51호증(김△△ 차장 달력, 업무수첩), 소갑 제1-52호증(주간업무회의), 소갑 제1-53호증[거래명세서], 소갑 제1-54호증[201공구 기본설계 용역 분담금 요청], 소갑 제1-55호증[2009 토목환경사업부 수주활성화 방안], 소갑 제1-56호증[2007, 211공구 설계용역 계약체결 건 및 설계용역대가 조정(안)], 소갑 제1-57호증[2009년도 4월 현재 추진중인 사업/2009년 5월 이후 추진예정사업], 소갑 제1-58호증[09년 상반기 수주실적 및 하반기 수주추진현황], 소갑 제1-59호증[204공구 설계용역비 분담내역], 소갑 제1-60호증[204/208공구 설계용역계약서], 소갑 제1-61호증[208공구 참여를 위한 내부분서], 소갑 제1-62호증(정△△ 과장 업무수첩), 소갑 제1-63호증[입출금내역서 및 213공구 외주업체 현황 등(동성엔지니어링)], 소갑 제1-64호증(성○○ 업무수첩), 소갑 제1-65호증(김▲▲ 상무 업무수첩), 소갑 제1-66호증[인천도시철도 2호선 참여사 현황], 소갑 제1-67호증[213공구 공동지반조사 자료] 및 소갑 제2-1호증부터 제2-51호증(각 진술서)을 통하여 인정된다.

### 3. 위법성 판단

4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 4. 피심인들의 책임성

5            피심인들의 이 사건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행위는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경성 공동행위인 점,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5. 결론

6            위 2. 내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2014년 1월 8일

의 장	위원장	노 대 래
	부위원장	정 재 찬 임기만료로서명날인불능
	주심위원	지 철 호
	위 원	안 영 호
	위 원	서 석 희
	위 원	유 진 희
	위 원	김 의 형
	위 원	박 병 형